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96 발의연월일: 2025. 5. 13.

발 의 자:한지아·안상훈·서일준

박정하 · 김예지 · 서범수

우재준 · 송석준 · 정성국

박성훈 • 이상휘 • 김 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무복 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 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항제4호 단서).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병역법」"을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장교는 2년으로 하며, 같은 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무장교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다.

제3조(복무 중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의 개정규정과 병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	
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	
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	
로 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	4
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	
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	
로 하고, <u>「병역법」</u>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u></u> 「병역법」 제58조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	<u>는 2년으로 하며, 같은 법</u>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ユ	복무기간
을 단취	축할 수 있	다.	

5. ~ 7. (생 략)

② ~ ⑥ (생 략)

	 	 	 	_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